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집**

**2006. 3**

**산업자원부**

---

## □ 전기안전관리자 통합 및 분할 선임

1. 전기안전관리자 통합(2개단지 아파트)선임 가능여부	33
2.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인근체육시설 2개소)선임 가능여부	34
3. 전기안전관리자 통합(공장과 인근펌프장)선임 가능여부	35
4.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소유 건물2동)선임 가능여부	36
5.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번지 다른2개 전기설비)선임 가능여부	37
6.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재단 건물3~4개)선임 가능여부	38
7.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번지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선임 가능여부	39
8.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번지내 건물2동)선임 가능여부	40
9.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소유 건물과 인근창고)선임 가능여부	41
10. 전기안전관리자 통합(통합관리소, 오피스텔2동)선임 가능여부	42
11.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입주자대표1, 주상복합건물6동)선임 가능여부	43
12. 전기안전관리자 통합(통합관리소, 아파트2개단지)선임 가능여부	44
13. 전기안전관리자 통합(한단지 3개설비임대주택)선임 가능여부	45
14. 전기안전관리자 통합(동일소유 임대아파트와 임대상가)선임 가능여부	46
15. 전기안전관리자 통합(통합관리소, 4개동아파트)선임 가능여부	47
16. 전기안전관리자 분할(동일구내 모자거래방식)선임 여부	48
17. 전기안전관리자 분할(소유자와 점유자)선임 의무 여부	49
18. 전기안전관리자 분할(공장일부 임대사용)선임 의무여부	50

### 1. 전기안전관리자 통합(2개단지 아파트)선임 가능여부

질 의

-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1동과 2동이 위치하고, 각 단지별로 한전과 계약하여 별도구좌로 수전 받고 있는 경우에 양 단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 전기용량(발전기 포함)이 2,800kW인 경우,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몇 년 경력이 있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 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뿍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 그러나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가 도로(국도)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전기수용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00kW이상의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2 참조) (인터넷민원질의, 2005.01.25)

## 12. 전기안전관리자 통합(통합관리소, 아파트2개단지)선임 가능여부

### 질 의

- 동일건설사가 건립한 아파트로 지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소규모아파트를 통합하여 1개의 관리소가 관리하고 있으며, 변전실이 각각 구분( 1단지 1,675kW, 2단지 1,300kW)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1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답 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뿍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 귀 단지의 경우에는 도로로 구분되어 동일구내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설비별(1단지 1,675kW 및 2단지 1,300kW)로 각각 선임하여 상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3.03)